

의안번호	2217358
의 퇴 인	서삼석 의원
회 답 일	2026. 8. 6.
추계번호	26B1374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소규모어가에 조건불리지역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중복수급을 허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3억 6,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18억 4,000만원(연평균 23억 6,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국토외곽 먼섬 거주 소규모어가에 조건불리지역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중복수급 허용 (안 제21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	2,368	2,368	2,368	2,368	2,368	11,840	2,368
국비(80%)	1,894	1,894	1,894	1,894	1,894	9,470	1,894
지방비(20%)	474	474	474	474	474	2,370	474

주: 본 추계는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실제 지급대상자 수, 지급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공익직접 지불금의 지급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항)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다만,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목과 나목의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심의 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법 제21조제1항제8호¹⁾는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²⁾,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³⁾, 제18조의4에 따른

-
- 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 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지역
2.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 제8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②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중복 수령을 금지하고 있음.

- 조건불리지역 어업인들은 소규모어가에 해당되면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소규모어가 직불금(130만원/년)을, 소규모어가에 해당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80만원/년)을 선택하여 수급받고 있는 상황임

□ 개정안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국토외곽먼섬법」이라 함”)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사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에 대한 중복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토외곽 먼섬 어업인의 공익직접지불금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본 추계는 국토외곽 먼섬 어업인의 공익직접지불금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 (지급대상자 수) 2025년 기준 「국토외곽먼섬법」에 따른 국토외곽먼섬(참고자료)은 총 43개섬, 인구는 26,835명, 어가수는 4,021호로, 소규모어가에 해당하지 않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는 어가수는 1,061호이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는 2,960호임.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지급대상자 수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2.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표 2] 조건불리지역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중복수급 지급대상자

(단위: 호/ '25년 기준)

구분	인구(명)	어가	조건불리 수급어가	조건불리 미수급어가
국토외곽면섬	26,835	4,021	1,061	2,96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지급단가) 1인당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단가는 80만원으로 가정
 - 현재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단가 적용(국비 80, 지방비 20)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지급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국토외곽면섬법」에 따른 국토외곽면섬에 거주하는 소규모어가에 조건불리지역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중복수급을 허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18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조건불리지역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중복수급 허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지급대상자 (A, 호)	2,960	2,960	2,960	2,960	2,960	—	—
지급단가 (B, 만원/호)	80	80	80	80	80	—	—
지급액 (C=A×B, 백만원)	2,368	2,368	2,368	2,368	2,368	11,840	2,368
국비(D=C×80%)	1,894	1,894	1,894	1,894	1,894	9,470	1,894
지방비(E=C×20%)	474	474	474	474	474	2,370	474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실제 지급대상자 수, 지급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

[참고자료] 「국토외곽면섬법」에 따른 국토외곽 면섬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번호	시도	시군	섬이름	인구(명)	어가수	조건불리 수급인원
총 계				26,835	4,021	1,061어가 (2,960어가 미수급)
(법)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1	인천	옹진군	백령도	4,875	396	22
2	인천	옹진군	대청도	1,201	279	28
3	인천	옹진군	소청도	221	51	22
4	인천	옹진군	연평도	1,981	472	162
5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104	51	8
6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119	50	32
7	전남	진도군	서거차도	98	45	11
8	전남	진도군	상하죽도	12	3	1
9	전남	진도군	맹골도	93	29	17
10	전남	진도군	죽도(조도면)	39	19	11
11	전남	진도군	곽도	21	14	8
12	전남	신안군	대흑산도	1,719	461	209
13	전남	신안군	장도	80	31	13
14	전남	신안군	영산도	50	12	5
15	전남	신안군	대둔도	279	102	39
16	전남	신안군	상태도	69	25	13
17	전남	신안군	중태도	11	4	1
18	전남	신안군	하태도	116	42	15
19	전남	신안군	만재도	70	22	19
20	전남	신안군	다물도	194	71	56
21	경북	울릉군	울릉도	9,042	244	38
22	경북	울릉군	죽도	1	0	0
23	경북	울릉군	독도	34	0	0
24	제주	제주시	비양도	140	26	13
25	제주	제주시	우도	1,618	324	28
26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	216	26	4
27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89	3	0

번호	시도	시군	섬이름	인구(명)	어가수	조건불리 수급인원
(법)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28	전북	군산시	어청도	262	81	26
29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50	15	5
30	전남	여수시	거문도	485	219	19
31	전남	영광군	횡도	3	2	0
32	전남	완도군	여서도	100	61	12
33	전남	신안군	홍도	439	113	70
34	전남	신안군	가거도 (소흑산도)	386	88	64
(시행령) 육지까지 항로의 최단거리가 50km 이상인 섬						
35	전남	여수시	동도	246	129	9
36	전남	여수시	서도	596	265	10
37	전남	영광군	안마도	180	80	11
38	전남	영광군	대석만도	11	7	1
39	제주	제주시	상추자도	922	76	54
40	제주	제주시	하추자도	635	75	3
(시행령) 정기 여객선이 없는 섬						
41	충남	보령시	황도	2	0	0
42	전남	영광군	죽도	4	1	1
(고시) 정기여객선 운항빈도가 낮은 섬						
43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22	7	1